

이란 핵협상 타결과 한-이란 경제관계 전망

I. 이란 핵협상 타결 주요 내용	1
II. 제재 해제의 주요 변수 및 전망	5
III. 제재 해제 관련 이란 경제동향 및 한-이란 경제관계	7
IV. 시사점	13

확인 : 팀장 오경일 (3779-6664)
oki1122@koreaexim.go.kr

작성 : 책임조사역 고영애 (6255-5720)
kya321@koreaexim.go.kr

I. 이란 핵협상 타결 주요 내용

□ 이란과 주요 6개국(P5+1) JCPOA 타결

- '15. 7. 14.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과 P5+1(UN안보리 5개국 및 독일) 간의 핵협상 최종 합의문서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의 내용이 확정됨에 따라, 13년 만에 이란 핵문제 해결 및 제재 해제의 가능성이 높아졌음.
- 앞서 이란과 P5+1은 '13. 11. 24일 '**공동행동계획**'(JPOA : **Joint Plan of Action**)에 합의하였고, 이후 추가협상을 통해 '15. 4. 2일 포괄적인 최종 합의안을 위한 '**정치적 기본합의**'(**Key Parameter for JCPOA**)를 도출하였으며,
- 군사시설 사찰 여부, 탄도미사일 및 무기거래 금지, 제재 해제시점 및 합의 위반시 제재 복귀(Snapback) 등의 쟁점에서 참여한 논쟁을 이어오며 협상 시한의 재연장을 거듭한 끝에 '15. 7. 14일 JCPOA의 내용을 확정하였음.

□ 이란 핵활동에 대한 제한적 허용

- 금번 협상안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및 연구개발을 허용하되, 핵시설 감축, 우라늄 농축 농도·재고량 제한 등의 규제를 통한 핵무기 제조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¹⁾
- **Natanz** 우라늄 농축시설의 구형 원심분리기(IR-1)는 현재의 19,000기에서 **5,060기로 감축**하여 10년간 유지하며, **Fordo** 농축시설은 원자력 물리연구 시설로 전환하고 연구개발용으로 IR-1형 1,044기의 유지만 허용
- 우라늄 농축농도는 향후 15년간 **3.67% 이하**로 유지하고, 재고량을 현재의 10,000kg에서 **300kg으로 제한**
- 15년간 중수로 신규 건설을 금지하고, Arak 중수로는 **플루토늄 생산이 불가능한 시설로 재설계**하며, 사용후 핵연료를 전량 해외 반출
- IR-4,5,6,8 등의 신형 원심분리기는 우라늄 농축과 무관한 방법으로 Natanz 시설에서 연구용으로만 사용 가능 등

1) 이란이 핵무기 제조를 결심한 시점부터 핵탄두 1개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breakout time)이 지금까지는 2~3개월이 걸렸다면, 합의안에 따라 우라늄 농축을 제한할 경우 breakout time이 1년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가짐. 즉 이란이 합의를 위반하더라도 핵탄두를 만들기 전에 사찰을 통해 적발하고,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짐.

□ 이란과의 무기거래 금지 규정은 기한을 두고 유지

○ 탄도미사일은 8년 간, 통상무기는 5년 간 유지

- * IAEA가 이란에 대해 핵무기 생산 의혹이 없다고 밝힐 경우, 조기 해제 가능성 존재
- 탄도미사일의 경우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 미국 등은 이란이 관련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금지함.
- 이란은 시아파 종주국으로써 예멘 반군, 시리아 정부군, 레바논 헤즈볼라 등에 무기를 제공 중인 바, 이란 핵 협상안에 대한 이스라엘, 중동 수니파 국가들의 반발 무마를 위해서도 무기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²⁾

□ IAEA 사찰 및 검증을 통한 제재 해제

○ IAEA의 사찰로 이란이 과거와 현재 모두 핵무기 개발과 무관하다고 검증되는 날(Implementation Day) 대 이란 제재를 해제하게 됨.

⇒ 이르면 내년 초 제재해제 개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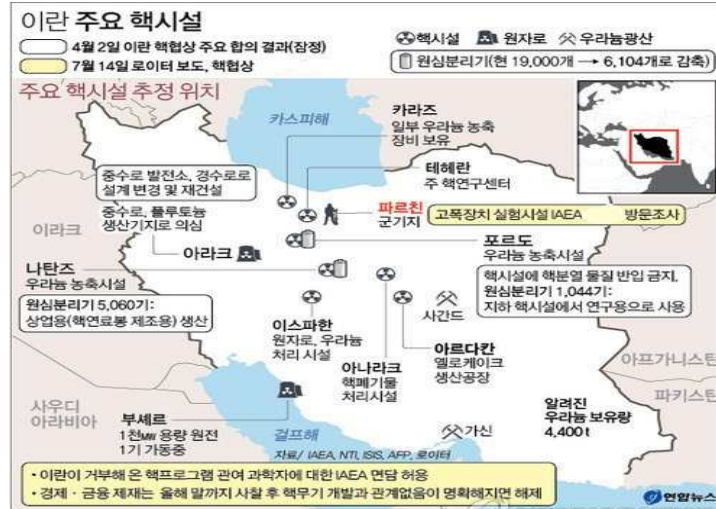
- IAEA는 '15. 10. 15일까지 사찰을 완료하고 '15. 12. 15일까지 IAEA 집행 이사회 앞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 바, 검증 완료는 그 이후로 예상됨.
- ※ EU가 2010년 이란산 석유·천연가스에 부과한 금수조치도 IAEA가 이란의 합의안 준수를 확인하는 동시에 종결될 예정임.

○ IAEA는 Parchin 고품 시험장 등 군사시설을 포함해 핵무기 개발 활동이 의심되는 모든 시설에 접근 가능함³⁾

- 다만, 군사시설의 사찰의 경우 24일 이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란, P5+1, EU 대표로 구성되는 중재기구(Joint Commission)의 협의를 거쳐야 함.
- IAEA가 이란이 생산한 농축 우라늄에 대해 25년간 모니터링하고, 비확산 조약(NPT)의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에 따라 우라늄의 채광부터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저장에 이르는 모든 과정과 시설을 매일 감시함.

2) 이란 핵협상 타결에 대한 수니파 국가들의 불안을 무마하기 위해, John Kerry 미 국무장관은 '15. 8. 3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걸프 지역 수니파 국가들에 대한 무기 판매시기를 앞당긴다는 데 합의하였고, 이에 대해 걸프 국가들은 이란 핵협상을 지지한다고 화답하였음.

3) 이란은 '15. 6. 22일 의회에서 군사시설 사찰 불가를 명시한 '핵주권·성과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가결하는 등 IAEA가 군사시설을 사찰하는 것과 이란 핵 프로그램에 관련한 과학자와 면담하는 것을 거부해왔으나, 이번 협상을 통해 이를 허용키로 결정하였음.



□ 이란의 합의내용 위반시 경제제재 다시 부과(Snapback 조항)

- 위반 여부 판단은 중재기구(Joint Commission)에서 결정함.
 - 위반 여부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며, 절차 이행에 총 65일이 소요됨.
- 중재기구가 이란이 관련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경우, UN 안보리는 이란에 대한 결의안을 '자동적으로' 재시행함.
 - ※ Snapback 조항 발동시, 미국과 EU는 이란과의 기존 거래에 대한 일정한 유예기간 및 경과조치를 마련할 전망

□ 미국은 대 이란 제재가 해제되는 시점에도 제재법률 유지

- 미국은 Implementation day에 기존 제재법률의 적용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해제하되, 제재법률은 개정 없이 약 8년간 유지함.
 - 미국의 제재 해제를 위한 법률 개정은 합의안 발효일로부터 약 8년 후 이행하는 반면, EU는 법률 개정도 즉각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 다만, 미국도 행정명령에 의한 제재는 즉각 폐지 또는 개정될 것으로 예상
- 또한 JCPOA에도 불구하고, Primary Sanction("미국 국적의 개인 및 법인"의 대 이란 거래를 일반적으로 금지)은 대부분 유지됨.
 - Secondary Sanction("외국 국적의 개인 및 법인"의 대 이란 거래를 예외적으로 금지)만 테러 지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 전 산업 영역에서 해제됨.

JCPOA('15. 7. 14)에 따른 합의이행(제재해제) 일정

- Finalisation Day ('15. 7. 20)
 - UN 안보리 결의안 통과일
 - (결의안 주요 내용) ①이란 제재에 관한 UN 안보리 결의안 해제, ②이란의 JCPOA에 대한 중대한 불이행이 있을 경우 제재 결의안 '복귀'

- Adoption Day ('15. 10월 예상)
 - 협상국간 합의에 따른 JCPOA 효력 발생일 (채택일로부터 90일 이내)

- Implementation Day ('16년 초 예상) : 제재 해제 등 합의 이행일
 - IAEA가 이란이 핵무기 개발과 무관함을 확인하는 날
 - * '15.10.15까지 사찰 완료 ⇨ '15.12.15일까지 집행이사회에 보고서 제출
 - 미국은 제재 관련 법률은 '적용 유예', 제재 관련 행정명령 일부 조항 해제
 - 특정 제재대상자(부속서 II, 별첨 3) 지정 해제 : Bank Mellat, Bank Melli, Bank Tejarat, IDRO, IRISL 등 정부 및 민간 주요 경제주체 대부분
 - UN 안보리는 기존 제재 결의안 해제 (단, '복귀' 가능)
 - EU는 제재 관련 규정들의 해제(terminate)·개정(amend)·유보(suspend) 조치

- Transition Day ('23. 7월 예상)
 - Adoption Day로부터 8년 후, 또는 그 이전이라도 IAEA에 의해 이란의 모든 핵 물질이 평화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평가하는 날
 - 미국은 법률에 따른 제재해제를 위한 법률개정 조치 이행
 - 특정 제재 대상자(부속서 II, 별첨4) 지정 해제 : 핵 개발에 직접 관련된 대상
 - * 단,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관여된 Tidewater 등은 해제대상에서 제외

- UN Termination Day ('25. 7월 예상)
 - Adoption Day로부터 10년 후, 이란 제재 관련 결의안이 '복귀'되지 않으며, 모든 제재가 해제됨을 선언하는 날

II. 제재 해제의 주요 변수 및 전망

1. 미국 의회의 협상안 승인 거부 우려

□ 미국은 JCPOA 이행을 위해 의회 승인 필요

- ‘이란 핵합의 심사법’에 따라 JCPOA에 대한 의회의 검토·승인이 필요하며, 60일 간의 검토를 거쳐 의회의 찬·반 투표를 진행하게 됨 (‘15. 9. 17 이후 예정).
- 의회 다수당이면서 이스라엘 보수파와 연계된 공화당의 반대가 강해 의회 승인은 부결될 전망이다.
 - 공화당은 그동안 합의안 무산을 공언해 왔으며, ‘15. 8. 4일 공화당 소속의 Ed Royce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JCPOA를 거부하는 결의안을 발의함.

□ 의회 부결시 대통령 거부권(veto) 행사 전망

- Barack Obama 대통령은 의회 승인 부결시 거부권 행사 의지를 공언하고 있으나, JCPOA를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마지막까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
 - 의회 승인 부결시 대통령은 12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통령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10일 이내에 양원 각각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나, 공화당의 의석 점유율은 2/3에 미달됨.⁴⁾
 - 그러나 강력한 유대계 로비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임기 등으로 미루어 민주당 내 반대파 세력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음.
 - 민주당의 차기 상원 원내 대표로 예정된 유대계 출신 Chuck Schumer 의원은 ‘15. 8. 6일 금번 이란 핵 합의안에 반대한다고 선언함.
 - 이스라엘 Netanyahu 총리는 합의안에 강력 반대하며 여론과 미 의회에 로비를 펼치는 등 민주당 내 유대계 의원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⁵⁾

4) 3분의 2 이상(상원 67표, 하원 290표)의 의결로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으나, 현재 공화당 의석수는 상원 54명, 하원 246명으로, 민주당으로부터 상원 13표, 하원 44표를 더 끌어와야 함.

5) Netanyahu 총리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중동 지역에 핵무기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며, 더 좋은 협상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2. 이란의 합의 위반으로 인한 제재 복귀 (Snapback 발효)

□ 합의 위반 적발시 Snapback 발효 가능성

- 최종 합의 위반 여부는 중재기구에 의해 다수결로 결정되며, 이란 · 중국 · 러시아가 반대한다 해도 미국 · 영국 · 프랑스 · EU가 찬성할 가능성이 높음.

⇒ 위반 적발시 Snapback이 실제 발효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이처럼 강력한 Snapback 조항 때문에 이란이 쉽게 위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음.

□ 이란의 합의 위반 가능성

- 이란은 '16. 2월 의회 및 전문가회의 선거가 예정된 바, 현 Rouhani 정권은 핵 합의안을 이행하고 경제활성화를 통해 선거에서 승리하여 온건 개혁파의 권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임.

- 이란은 이미 '13. 11. 24일 도출된 합의안에 따라 20% 농축 우라늄의 희석, Arak 중수로 설계변경 착수, 플루토늄 생산량의 대폭 감축 등 제반 요구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본적 신뢰를 획득하는 단계를 거쳤음.

- 다만, 혁명수비대 등 강경 보수파의 방해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혁명수비대(IRGC: Iran's National Guard Corps)를 중심으로 한 보수파는 정치적 영향력은 물론 이란 내 주요 경제적 이권까지 장악하면서 온건파 Rouhani 정권의 최대 위협이 되고 있음.⁶⁾

- 특히 핵 협상시 핵심 쟁점이었던 군사시설 사찰에 대해 보수파가 저항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협상 이행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임.

6) 혁명수비대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체제 수호를 위해 창설한 최정예 부대로, 정규군과 함께 양대 군사조직을 형성하고 있음. 정규군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 팔레비 왕조의 군사조직을 계승한 것이라면 혁명수비대는 당시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이슬람 최고혁명위원회가 새로 창설한 정예군으로, 약 12만 명에 이르는 육·해·공군 및 특수·정보부대 등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음.

혁명수비대는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이란이 고립된 기간 동안 가장 강력한 경제세력의 하나로 부상함. 혁명수비대 관련 기업으로 알려진 엔지니어링 건설업체 Khatam-al Anbiya는 장기 계약액이 이란 GDP의 12% 규모인 50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으며, 일본 Mazda 브랜드 승용차 조립업체 Bahman Group의 지분 45%를 혁명수비대가 보유하고 있음. 혁명수비대는 이밖에도 '09년에는 78억 달러에 국영 통신기업을 인수했으며, 세계 최대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는 등 건설, 제조, 은행, 해운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Ⅲ. 제재 해제 관련 이란 경제동향 및 한-이란 경제관계

1. 이란 경제동향

□ 제재 완화 조치로 경제성장률 회복세, 물가상승 완화

- '13. 11. 24일 합의된 JPOA에 따른 '부분적 제재 완화' 조치에 힘입어 '14년부터 경제성장률이 회복되고 물가상승률도 낮아지는 추세임.
- '10. 6월 UN안보리 결의안 1929호 채택 등 대 이란 제재 강화로 '11년부터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였으며,
- '12년 미국과 EU의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로 급격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어 '12년 $\Delta 6.6\%$, '13년 $\Delta 1.9\%$ 등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함
 - 산업 부문별로는 해외 자본·기술의 도입 감소로 인하여 공업 부문의 성장 침체가 가장 심각*
- * 공업 부문 성장률은 '12년 $\Delta 18.3\%$, '13년 $\Delta 3.8\%$ 로 전체 GDP 성장률에 미달
- '13. 8월 Rouhani 정부 출범 후 재개된 핵협상 과정에서 취해진 제재 완화 조치의 혜택으로 '14년에는 플러스(+) 경제성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추정됨.
-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년 39.3%로 급등하였는데, 이는 경제제재 외에도 당시 이란 정부의 보조금 개혁 정책 및 통화량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임.7)

□ 유가 하락으로 재정적자 지속

- 제재로 인한 원유 생산량 감소와 더불어 최근의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재정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경상수지도 흑자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임.
- 이란은 석유 부문이 재정수입의 40%, 총수출의 80%를 차지하는 등 석유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유가 변동에 민감한 구조임.

7) Mahmoud Ahmadinejad 前대통령(2005~13년)이 이끌었던 당시 이란 정부는 에너지·식량 등의 가격을 현실화시키려는 보조금 개혁 정책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불만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원함에 따라 통화량이 증가되는 등 물가상승률을 부추겼음. 이후 Rouhani 정부의 적절한 재정·통화정책으로 물가상승은 완화되는 추세임.

- 2015/16년 예산안은 유가를 배럴당 72달러로 가정하고 있으나, '15년 8월 현재 유가는 50달러를 하회하고 있어 재정적자 지속이 불가피함.
- * IMF는 이란의 '15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유가수준(break-even oil price)을 배럴당 약 130달러 내외로 추정
- 이란 정부는 보조금 개혁 가속화, 세수 확대, NDF(국가개발기금)* 적립금 활용, 환율 절하 등 재정지출 축소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 * NDF(National Development Fund) : 2011년 설립된 620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로, 이란 정부는 석유수출 수입(收入)의 30% 이상을 동 펀드에 이전

<표 1> 최근 5년간 이란의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11	2012	2013	2014 ^e	2015 ^f
명목GDP(US\$억)	5,920	5,872	5,116	4,253	4,151
실질GDP성장률(%)	3.8	-6.6	-1.9	4.3	2.2
소비자물가상승률(%)	20.6	26.0	39.3	17.2	15.6
재정수지/GDP(%)	-0.8	-0.6	-0.9	-1.0	-2.8
경상수지/GDP(%)	10.1	4.5	5.5	5.6	2.6
공식 실업률(%)	12.3	12.2	10.4	10.3	10.5
연평균 환율(리알/US\$)*	10,616	12,176	18,414	25,942	29,262

자료 : EIU ViewsWire, Country Data - Iran. (Accessed on 25th August 2015)

- 재정적자, 인플레이션, 실업률 등은 제재 해제 후에도 주의가 필요함.
 - (재정수지) 제재 해제시 원유수출은 증가하겠으나, 이란산 원유의 국제시장 복귀로 인한 공급량 증가는 국제유가의 추가하락으로 이어져 이란의 석유 부문 수입(收入) 증가에 한계를 초래,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 * 이란의 일일 원유생산량은 현재의 약 280만 배럴에서 제재 해제 이후에는 100만 배럴 증가할 전망이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란산 원유의 국제시장 복귀로 국제유가가 현재보다 배럴당 5~15달러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인플레이션) 제재 해제시 수입물가 하락 등에 힘입어 인플레이션 완화가 기대되나, 약 1,000억 달러 규모(GDP의 약 25%)의 해외동결자산 유입 및 원유수출 수입(收入)의 증가로 인한 통화량의 증가 등이 새로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실업률) 두 자릿수를 지속하고 있는 실업률은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실업률은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됨.

2. 한-이란 경제관계

□ 이란은 한국의 중동 지역 제3위 수출 대상국

- 이란은 우리나라의 중동 지역 제3위 수출대상국('14년 기준)임. 그러나 UAE 앞 수출물량의 30%이상이 이란으로 재수출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란은 중동 지역 최대의 수출시장으로 볼 수 있음.⁸⁾
- '14년 우리나라의 50대 수출대상국 중 MENA(중동·북아프리카) 국가는 총 7개국이며, 점유율은 4.7%를 기록하였음.

<표 2> 우리나라의 중동 지역 주요 수출대상국

(US\$백만, 전년대비 %)

순위		국 명	수출규모		점유율(%)*	증가율(%)
중동	전체		2013년	2014년		
1	15	사우디아라비아	8,828	8,288	1.4	-6.1
2	20	UAE	5,738	7,212	1.2	25.9
3	26	이 란	4,481	4,162	0.7	-7.0
4	33	이집트	1,535	2,364	0.4	54.0
5	38	쿠웨이트	1,133	1,976	0.3	74.4
6	42	이라크	1,973	1,798	0.3	-8.9
7	49	알제리	1,024	1,417	0.3	38.4
8	51	요르단	1,317	1,383	0.2	5.1
9	54	이스라엘	1,464	1,225	0.2	-16.3
10	55	오 만	1,007	1,172	0.2	16.3
중동 전체			32,288	34,786	6.1	7.7

* 우리나라 총수출금액(2014년 5,731억 달러) 대비
 자료: 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 우리나라의 대 이란 교역 및 투자규모는 경제제재 강화로 인해 '12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하였음.
- (수출) 대 이란 제재에도 불구하고 '12년까지 증가했으나, '13년에 대폭 감소(전년대비 $\Delta 28.4\%$)하여 '14년까지 감소 추세를 지속하였음.
- (수입) '12년 이후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로 수입규모가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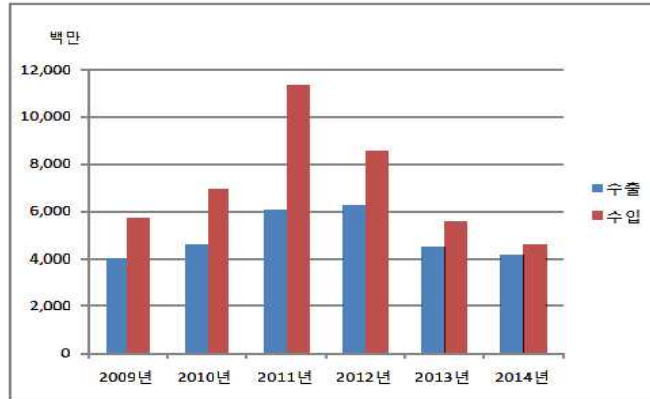
* 제6위의 원유수입국('14년 기준) / '12년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조치 전에는 제4위

8) 전 세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의 제26위 수출대상국이자 제27위 수입대상국임.

<표 3> 한-이란 연도별 교역현황

(U\$백만, 전년대비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 출	금 액	3,992	4,597	6,068	6,257	4,481	4,162
	증가율	△8.1	15.2	32.0	3.1	△28.4	△7.1
수 입	금 액	5,746	6,940	11,358	8,544	5,564	4,578
	증가율	△30.1	20.8	63.7	△24.8	△34.9	△17.7
수 지	금 액	△1,754	△2,343	△5,290	△2,287	△1,083	△416



자료: 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표 4> 한-이란 연도별 투자현황

(신고기준, U\$백만, 건)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누계
이란→한국*	금액	1.4	4.0	6.2	0.2	0.2	-	41.6
	건수	22	26	19	3	2	-	156.0
한국→이란**	금액	6.1	1.1	0.1	0.02	-	-	98.3
	건수	3	4	1	1	-	-	28.0

*: 1962~2014년 / **: 1968~2014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부품, 철강, 가전제품, 합성수지 등임.
 - 자동차부품, 철강, 무선통신기기는 '14년 중 제재완화의 효과로 전년대비 수출이 급증하였으며, 가정용 전자제품은 제재강화 후인 '12~'13년까지도 꾸준히 증가하다 '14년 중 감소하였음.
- 이란은 중동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대부분 완전조립생산(CKD) 방식으로 생산됨에 따라 자동차 부품과 철강판의 수요가 많음.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제품은 제재 본격화 이전인 '11년까지 우리나라의 대 이란 수출품목 중 1~2위를 차지하였음.

<표 5>

2014년 우리나라의 대 이란 10대 수출입품목

(US\$백만, 전년대비 %)

순위	수 출				수 입			
	품 목	금 액	증가율	비 중	품 목	금 액	증가율	비 중
1	합성수지	435	8.9	10.4	원유	4,502	-12.3	98.3
2	철강관	426	35.0	10.2	LPG	39	-83.5	0.9
3	영상기기	401	-18.7	9.6	아연제품	12	5.8	0.3
4	냉장고	264	10.7	6.3	기타금속광물	4.6	4,152	0.1
5	자동차부품	259	92.8	6.2	합성수지	2.7	3,002	0.1
6	평판디스플레이센서	204	-7.9	4.9	갑각류	2.7	2,127	0.1
7	종이제품	199	-55.1	4.8	연(鉛)제품	2.6	-33.2	0.1
8	가정용회전기기	166	-22.8	4.0	전자응용기기	1.7	1,586	0.0
9	무선통신기기	140	73.2	3.4	동(銅)제품	1.5	206.9	0.0
10	고무제품	127	43.9	3.0	기호식품	1.5	10.9	0.0
	합 계	2,620			합 계	4,571		

자료: 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이란 자동차 산업 동향

- 이란은 '13년 말 제재완화 조치로 '14년 전년대비 46% 증가한 109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한 중동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세계 18위)
 - * 제재 이전에는 150만 대 이상 생산
 - 3대 국영 자동차 회사인 Iran Khodro, Saipa, Pars Khodro사가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며, 25개 자동차 회사와 1,200개 자동차 부품업체가 영업 중
 - 대부분 완전조립생산(CKD) 방식으로 생산되는데, 경제제재로 부품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중국산 부품으로 대체 (70% 이상 점유) ⇒ 품질 저하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누적된 상태
 - '12년 외국 자동차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국가 주도로 국내 생산을 강화
 - * 제재 이전 이란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Renalut, Peugeot 등 유럽계 자동차 기업들이 핵협상 타결 후 복귀 준비 중

□ 한국은 이란의 제3위 수입대상국

- 한국은 이란 경제제재 이전인 '09년 4위에서 '14년 3위로 상승하였음.
- 중국은 '09년 3위에서 '14년 1위로 상승하며 수입규모도 3배로 커짐.

<표 5> 이란의 주요 수입대상국

2009년		순위	2014년	
국가	금액(억 달러)		국가	금액(억 달러)
UAE	122.5	1	중국	121.9
독일	46.9	2	UAE	115.2
중국	42.8	3	한국	41.4
한국	30.9	4	인도	40.6
스위스	26.5	5	터키	37.9
이탈리아	18.9	6	독일	25.1
영국	17.7	7	스위스	20.7
터키	17.4	8	네덜란드	10.3
프랑스	15.9	9	이탈리아	9.9
일본	14.1	10	대만	7.5
수입총액	496.7		수입총액	520.6

자료: 무역협회 세계무역통계.

□ 제재 이전, 이란은 한국의 6대 건설 시장

- '75년 첫 진출 후 우리나라가 대 이란 경제제재에 동참한 '10년까지 국내 건설업계는 이란에서 119억 달러의 건설공사를 수주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액 전체 6위에 해당하는 규모였음
- 우리나라가 대 이란 경제제재에 동참한 '10년 이후 신규수주는 사실상 전면 중단되어, 전체 17위로 그 위상이 급격히 하락하였음.

<표 7> 우리 기업의 이란 South Pars 가스전 개발공사 수주 내역

(US\$백만)

업 체	공사명	발주처	금액	착공일	준공일
GS건설	9-10단계	이란국영석유회사	936	'03.1.1	'12.1.23
	6-8단계(탈황, 유황회수설비)	Pars석유가스공사	1,393	'09.11.15	'13.5.14
대림산업	6-8단계	Petropars	348	'03.6.1	'07.7.31
	12단계 (패키지 2)	Petropars	612	'09.12.1	'13.3.31
현대건설	2-3단계 (육상설치 공사)	Total South Pars	1,015	'99.3.30	'02.6.30
	4-5단계	Agipiran Pars	1,623	'02.3.1	'05.2.28
현대중공업	해저 파이프라인 설치공사	Total South Pars	105	'99.7.29	'01.4.30
합 계			6,034		

자료: 해외건설협회.

이란 건설시장 동향

- 이란은 2025년까지 석유·가스 부문에만 5,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

< 이란 석유·가스 부문의 주요 신규 프로젝트 추진 현황 >

(US\$억)

프로젝트명	예산규모	주계약 체결	주계약 완공
Kish 가스전 개발(2,3단계)	50	'14.11월	2017년
이란-인도 해저송유관 부설	40	'15.11월	2020년
Golshan 및 Ferdowsi 역외유전·가스전 개발	60	'15.12월	2019년

자료: MEED.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은 세계 4위의 해외건설 발주국인 이란의 건설 부문 성장률이 2016년부터 5년간 평균 3.4%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이란 연도별 건설시장 규모 추이 >

(US\$억)

연도별	2012	2013 ^e	2014 ^e	2015 ^f	2016 ^f
금액규모	659	887	1,065	1,283	1,544

자료: 해외건설협회.

IV. 시사점

□ 잠재력이 큰 이란 시장에서의 재진출을 위한 준비 필요

- 이란은 풍부한 에너지 자원, 인구 약 8,000만 명의 소비 시장, 중동 최대의 제조업 기반 등 **폭넓은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임.**
 - **제재 해제 후 구매력 상승**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식음료, 화장품, 사치재 등의 소비재 수요 및 IT 분야 등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중동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인 이란은 '16년경 생산량이 제재 이전 수준 (약 150만 대)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어, **제재 이전 우리나라의 대 이란 최대 수출품이었던 자동차 부품, 철강제품 수요도 본격 증가할 전망이다.**
 - 아울러 석유수출 확대, 외국인투자 증대, 해외동결자산 유입 등을 기반으로 제재 해제 후 석유·가스전 및 인프라 개발에 상당한 투자가 이어질 전망인 바, 국내 건설업계의 이란 시장 재진출시 큰 수혜가 기대됨.

- 반면, 중국, 유럽, 일본 기업들과의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제재 이전 이란의 주요 수입대상국이었던 독일·프랑스·이탈리아 기업들과 일본 기업들이 진출 재개를 모색하고 있으며, 제재를 기회로 이란 시장에서 세력을 확장해온 중국에게도 ‘일대일로’의 거점으로서의 이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임.⁹⁾
 -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가격·품질경쟁력 확보 전략의 수립, 현지 네트워크 점검, 정부 차원의 우호적 통상 환경 조성 등의 준비가 필요함.

□ 금년 말까지는 기존의 대 이란 제재가 지속됨에 유의

- IAEA가 이란의 합의사항 이행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에 유의해야 함.¹⁰⁾
- ⇒ ‘13.11.24일 협상안(JPOA)에 의한 잠정적 제재완화 조치*에 따라야 함.
 - * 제한적·잠정적·선별적 완화 조치로, 석유화학제품 수입, 자동차 분야 수출입, 귀금속 수출입 등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제재 완화
 - 제재대상 거래는 협상, 상담 등 제재 해제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되, 최종 계약 서명은 **Implementation Day 발표** 후에 하는 것이 안전함.
 - 수출 등 해외거래 진행시 제재 관련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 이란 교역·투자 가이드라인,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 대금결제 가이드라인, 금융 거래 사전허가제 등

□ 제재 해제 이후에도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對이란 제재의 국제법적 근거인 UN 안보리 결의가 Implementation Day에 해제되면 우리나라의 대 이란 제재도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 의회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즉각적인 제재 해제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음.

9) 독일 경제장관 사절단 파견(15.7.19) 및 Wolkswagne과 Iran Khodro 간의 자동차 생산 협력(15.7.29), 이탈리아 경제·외교장관 사절단 파견(15.8.4), 중국 원전 2기 건설 수주(15.7.22) 등 각국은 이란과의 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10) P5+1은 금년 상반기의 핵협상 과정 중에도 독일 Commerzbank에 대한 제재(3. 12 발표), 원유개발 전문기업 Schlumberger와 결제대행업체 PayPal에 대한 제재(3. 25 발표), Mahan Air의 에어버스 여객기 구입 시도 관련 제재(5. 21 발표) 등 제재의 강력한 집행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 * 단, 미국인의 대 이란 거래금지(Primary Sanction), 인권침해 및 테러지원 관련 제재,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관련 대상 등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¹¹⁾
- 안보리 결의에 근거한 각국의 대 이란 제재규정은 원칙적으로 각국이 독자적으로 마련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제재규정은 미국측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에 놓여 있음.¹²⁾
- 또한 제재 해제 후에도 이란의 의무사항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모든 제재가 다시 복귀(snapback)될 수 있으며,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합의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란의 의무사항 위반이 없더라도 이란의 테러단체(레바논 헤즈볼라 등) 지원,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추가 경제제재를 가함으로써 핵협상 합의 이행을 사실상 무산시킬 수도 있음.
- * 공화당 대선 예비후보들은 이미 합의 파기를 공언하고 있으며, 유력한 후보 중의 하나인 Jeb Bush 前 플로리다 주지사는 완곡하게 반대 의사 표명

문의 : 해외경제연구소 지역연구2팀
책임조사역 고영애 (02-6255-5720)
kya321@koreaexim.go.kr

11) 이란의 제재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Tidewater사가 운영하는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거래도 불가함에 유의해야 함. Bandar Abbas 항만시설의 경우도 Tidewater사가 운영하고 있으나, 제2터미널은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15.8.5 산업통상자원부).

12) 안보리 결의안 1929호(10.6월)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대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 등은 미국의 국방수권법(NDAA), 행정명령(EO), 포괄적이란제재법(CISADA)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10년 미국의 독자적 제재대상이었던 이란 Mellat bank의 서울지점을 폐쇄하게 된 것도 미국의 제재 동참 요구를 반영한 조치였음.

< 참고자료 1 >

대 이란 핵문제 관련 주요 일지

- '02. 8월 : 이란 반정부 단체 '국민저항위원회', 나탄즈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최초 폭로
- '03. 6월 : IAEA, 이란의 핵활동 보고 의무 불이행 지적
 - '03.11월 : 이란,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유예 발표, IAEA 핵사찰 허용
- '05. 6월 : 이란, 반서방 강경보수파 마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당선
 - '05. 8월 : 이란, '평화적 목적' 우라늄 농축 재개 발표
- '06. 4월 : 이란, 시험용 저농축 우라늄 추출 성공 발표
- '06.12월 : UN안보리, 1차 제재 결의안 1737호 채택
- '10. 6월 : UN안보리 결의안 1929호, 미국 포괄적이란제재법(CISADA) 등 제재 강화
- '11. 6월 : 이란, 20% 농축 우라늄 50kg이상 생산 발표
 - '11.11월 : IAEA, 이란 핵무기 개발 의심 보고서 공개
- '12. 7월 : 미국·EU,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 '13. 4월 : 핵협상 부결 및 이란, 우라늄 생산 증대 발표
- '13. 5월 : 미국, 이란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 발표
- '13. 8월 : 이란, 온건파 로하니 정부 정식 출범('13. 10월 핵협상 재개)
- '13. 11. 24 : P5+1/이란 '공동행동계획(JPOA:Joint Plan of Action)' 합의
 - 핵개발 잠정 동결 및 자동차분야 등 제재의 부분적·한시적 완화
- '14. 1월 : JPOA에 따른 추가협상 시작
- '14. 7월 : 협상시한 1차 연장
- '14.11월 : 협상시한 2차 연장
 - 정치적 타협시한('15.3.31) 및 기술적 타협시한('15.6.30) 설정
- '15. 4. 2 : 정치적 기본합의(Key Parameter for JCPOA) 타결
- '15. 5월 : 미 의회, '핵협상안 의회 승인법'가결
- '15. 6월 : 기술적 타협시한 연장
- '15. 7.14 :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최종 타결

< 참고자료 2 >

JCPOA('15. 7. 14)에 따른 미국의 제재 해제 내용

<p>경제제재 적용 유예 (금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중앙은행을 포함한 이란 은행과의 금융 거래 - 이란 리알화를 사용한 거래 - 이란이 개입하는 중개무역 - 이란 정부에 대한 미국 달러화 지폐 공급 - 이란 해외보유 자산 이전 허용 - 이란 국채 매입 - 이란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 통신문 서비스(SWIFT) - 보험, 재보험 제공 - 이상의 사항과 관련한 거래
<p>경제제재 적용 유예 (에너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의 원유 수출 - 이란의 석유, 가스,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투자 - 이란산 석유, 석유화학제품, 천연가스 수입 - 이란으로의 정유, 석유화학 제품 수출 - 이란 에너지분야 관련 거래 - 이란 해운, 조선, 항만 분야 거래 - 금, 귀금속 거래 - 알루미늄, 철강 및 기타 특정 물질, 소프트웨어 거래 - 이란 자동차 분야 거래 - 이상의 사항과 관련한 거래
<p>경제제재 해제 (행정명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명령 제1357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금융기관의 제재 대상자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 금지 ● 대통령명령 제1359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자원개발 관련 재화 및 서비스 제공 금지 - 석유화학제품 생산 관련 재화 및 서비스 제공 금지 - 이란중앙은행 포함 이란금융기관 자금세탁우려대상 지정 ● 대통령명령 제1362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의 석유화학제품 수입 금지 -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 구매 관련 금융거래에 관여한 외국 금융기관 제재 ● 대통령명령 제1364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알화 관련 금융거래에 관여한 외국 금융기관 제재 - 자동차 업계에 사용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 제공 금지 ● 대통령명령 제13628호 제5조, 제7조,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유제품 생산 및 수입 능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재화 등 제공 금지 - 이란에 대한 정유 제품 수출 금지

<p>제재대상자 지정 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nex II, Attachment 3의 제재 대상자에 대한 지정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 이행일(Implementation day)로부터 SDN 등 지정 해제 - Bank Mellat, Bank Melli, Bank Tejarat, IDRO, IRISL, Iran Air 등 정부 및 민간 영역의 주요 경제주체 대부분 • Annex II, Attachment 4의 제재 대상자에 대한 지정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개발에 직접 관련된 개인 및 단체로, Transition day에 재제 해제 • 단,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관련된 Tidewater, Oriental Oil Kish, Ghorb Nooh 등은 제외
<p>항공 관련 거래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에 대한 민간 항공기, 관련 부품 및 서비스 공급 허용 - 미국인의 소유 또는 지배를 받는 외국기업은 거래시 면허가 필요
<p>주정부 제재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법이 제재 적용 중단 및 해제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연방 정부는 JCPOA 이행을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함 - 연방 정부는 미국 정부의 변경된 정책이 반영되어 주법상 제재 적용 중단, 해제가 이루어지도록 주 정부를 설득할 의무

< 참 고 문 헌 >

- Iran Autos: Key Takeaways From Nuclear Deal, BMI, 17 July 2015.
Iran's Opening: 10 Charts Showing Huge Opportunities And Risks, BMI, 29 July 2015.
Iran country report, EIU, August 2015.
Iran eagerly anticipates nuclear deal, MEED., July 2015.
이란 핵협상 극적 타결, 거대 이란시장이 열린다, 무역협회, '15.7.15.
신동찬,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전망, 법무법인 율촌, '15.7.14 대한상의세미나.
이권형, 이란 진출 유망산업 및 진출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7.14.
인남식, 이란 핵협상 타결의 함의와 전망, 외교안보연구소, '15.7.24.
홍정화, 핵협상 타결에 따른 향후 이란시장 전망, 국제무역연구원, '15.8.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시스템

무역협회 무역통계 (www.kita.net)

Wall Street Journal (www.wsj.com)

IMF (www.imfstatistics.org)

KOTRA 해외 비즈니스 정보 포털 Global Window (www.globalwindow.org)